■ 범죄수사규칙 [별지 제111호서식]

제 호

수 신 :

제 목 : 범죄신고자등 인적사항 미기재사유보고서

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범죄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 등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보고합니다.

<table>
<tr><td>사 건 번 호</td><td colspan="4"></td></tr>
<tr><td>신원관리카드
관 리 번 호</td><td colspan="4">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대 상 자
인 적 사 항</td><td>성 명(가명)</td><td></td><td>신 분</td><td></td></tr>
<tr><td>신변안전조치
해 당 여 부</td><td></td><td>피의자와의 관계</td><td></td></tr>
<tr><td>미기재 원인</td><td colspan="4">대상자 ○○○(법정대리인 ○○○)의 신청, 직권</td></tr>
<tr><td>서 류 명 및
미 기 재 내 용</td><td colspan="4"></td></tr>
<tr><td>미기재 사유</td><td colspan="4"></td></tr>
</table>

㊞

[별첨첨부]

[미기재 원인]

[서류명 및 미기재 내용]

[미기재 사유]